

특 허 법 원

제 5 부

판 결

사 건 2026허10028 등록무효(디)

원 고 주식회사 A

대표이사 B

소송대리인 변리사 박재성

피 고 주식회사 C

대표이사 D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율촌, 담당변호사 서예림, 이형욱

변 론 종 결 2026. 5. 21.

판 결 선 고 2026. 6. 18.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특허심판원이 2025. 12. 30. 2023당1500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

이 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의 이 사건 등록디자인 (갑 제1, 2호증)

- 1) 등록번호/ 출원일/ 등록일: 제971647호/ 2017. 12. 29./ 2018. 8. 31.
- 2)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 건축용 경량블록
- 3) 디자인의 설명, 창작 내용의 요점 및 도면: [별지 1]과 같다.

나. 선행디자인들¹⁾

1) 선행디자인 1 (갑 제4호증)

2016. 8. 5. 특허청 공개특허공보에 제10-2016-92838호로 게재된 '경량블록'에 관한 디자인으로, 그 대표 도면은 [별지 2]와 같다.

2) 선행디자인 2 (갑 제5호증)

2017. 2. 24. 일본 의장등록공보에 제1596332호로 게재된 '유리 노 축열기용 벽면 블록'에 관한 디자인으로, 그 도면은 [별지 3]과 같다.

다. 이 사건 심결의 경위

1) 원고는 2023. 4. 19. 특허심판원에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디자인권자인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① 도면의 주요 요부가 불일치하여 공업상 이용할 수 없고, ②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출원 전에 공지 및 공연실시된 비교대상디자인 ²⁾ 또는 비교대상디자인 ²³⁾와 유사하다.'라고 주장하면서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하였다.

1) 원고는 이 사건 소송에서 선행디자인 2를 추가하였다(2026. 2. 20. 자 원고의 준비서면 참조).

2) 이 사건 심결의 비교대상디자인 1은 이 사건 소송의 선행디자인 1과 같다.

2) 특허심판원은 이를 2023당1500호로 심리한 후, 2025. 12. 30. '① 이 사건 등록 디자인의 도면상 불일치가 있으나 그 디자인이 속하는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이하 '통상의 디자이너'라 한다)가 경험칙에 따라 디자인의 요지를 파악할 수 있으므로 공업상 이용가능하고, ② 비교대상디자인 1과 유사하지 않으며, ③ 비교대상디자인 2는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출원일 전에 공연 실시되었으나 신규성 상실의 예외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원고의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심결(이하 '이 사건 심결'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도면 간 불일치로 인하여 공업상 이용할 수 없으므로 디자인보호법 제33조 제1항 본문에 따라 그 등록이 무효가 되어야 한다.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선행디자인 1, 2와 유사하여 신규성이 없고, 선행디자인 1, 2 및 그 결합으로부터 용이하게 창작될 수 있으므로 디자인보호법 제33조 제1항 제3호 및 제2항에 따른 등록무효사유가 존재한다.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원고의 대표이사인 B에 의해 창작된 것이므로 디자인보호법 제121조 제1항 제1호, 같은 법 제3조 제1항에 따른 등록무효사유가 존재한다.

3.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공업상 이용가능성 흠결 여부

가. 관련 법리

디자인보호법 제33조 제1항 본문에서 규정하는 "공업상 이용가능성"은 의장등록을

3) 이 사건 소송의 선행디자인 2와는 다른 디자인으로, 원고는 이 사건 소송에서 '비교대상디자인 2'에 관한 주장을 하지 않았다.

받기 위한 적극적 요건의 하나라 할 것인바, 공업상 이용가능성이란 공업적 방법에 의하여 양산될 수 있는 것을 의미하고, 공업적 방법이란 원자재에 물리적, 화학적 변화를 가하여 유용한 물품을 제조하는 것을 말하며, 양산이라 함은 동일한 형태의 물품을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생산함을 뜻한다(대법원 1994. 9. 9. 선고 93후1247 판결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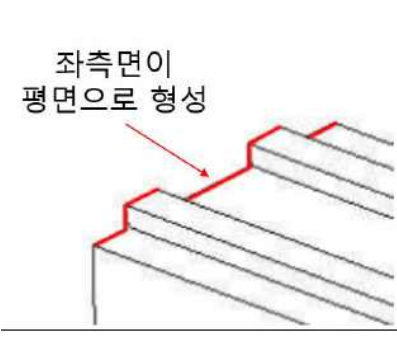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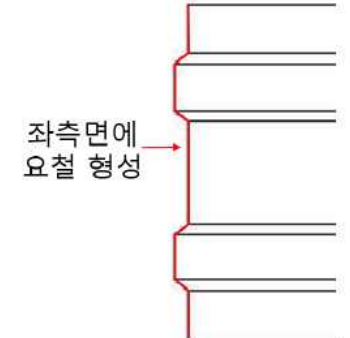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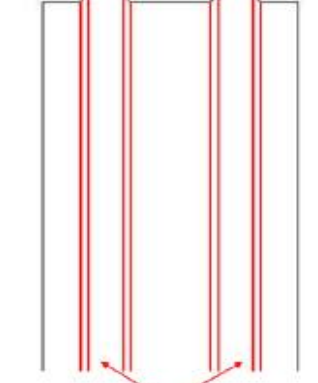
디자인 등록출원서에 첨부된 도면에 서로 불일치한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정도가 경미하여 그 디자인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경험칙에 의하여 디자인의 요지를 충분히 특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공업적 생산방법에 의하여 동일물품을 양산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그 디자인은 디자인보호법 제3조 제1항 본문 소정의 '공업상 이용할 수 있는 디자인'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05. 9. 15. 선고 2004후2123 판결 참조).

나. 구체적 판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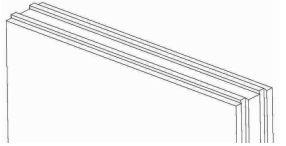
원고는 아래와 같이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도면들이 일치하지 않아서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요지를 파악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피고도 일부 도면이 일치하지 않는 점에 대해서는 인정한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이유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기 어렵다.

1) 원고는, [도면 1.1](사시도)에는 좌측면이 요철구조 없는 평면으로 도시되었으나 [도면 1.6](평면도)와 [도면 1.4](좌측면도)에는 돌출된 중간 패널로 인해 좌측면에 요철이 형성되어 있다고 주장한다.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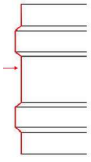
4) 원고는 2026. 2. 20. 자 준비서면에서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도면 1.2](정면도)와는 달리 [도면 1.3](배면도)에도 좌측면에 볼록부가 형성되어 있다고 주장하나, 갑 제2호증의 도면을 확대하여 보아도 그러한 볼록부는 확인되지 않으므로 위 주장에 대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사시도(도면 1.1)	평면도(도면1.6)/ 저면도(도면 1.7)	좌측면도(도면 1.4)
 좌측면이 평면으로 형성	 좌측면에 요철 형성	 좌측면에 요철 형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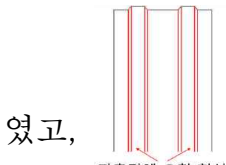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등록공보 중 '디자인의 설명'에는 "본 디자인은 건축물의 벽체, 칸막이⁵⁾, 이중벽 등을 시공할 때 사용하는 경량블록으로, 블록의 테두리 부분에 형성된 요철 구조를 통해 다른 경량블록을 끼움 결합하여 시공함."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디자인 창작 내용의 요점'에는 '건축용 경량블록의 형상과 모양의 결합을 디자인 창작내용의 요점으로 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이에 의하면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지배적 특징은 돌출된 중간패널과 다른 패널들 사이의 각도가 아니라 돌출된 중간패널의 형상에 있다고 보인다. 사시도에 의하면 2장의 중간패널들이 위쪽 방향과 왼쪽 방향으로

로 돌출된 것임을 확인할 수 있고(), 이를 바탕으로 평면도/저면도와 좌측면도를 다시 살펴보면 위쪽 및 왼쪽으로 돌출된 중간패널을 표현하기 위하여

5) 갑 제2호증에는 '칸막이'로 기재되어 있으나, '칸막이'의 오기로 보인다.



와 같이 평면도에 입체적 단차를 표시하여 위쪽으로 돌출된 중간패널을 표시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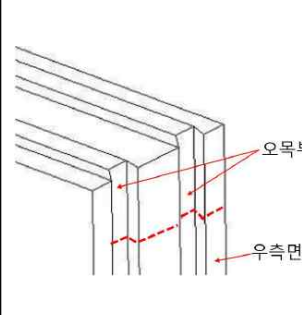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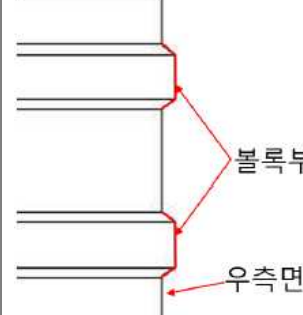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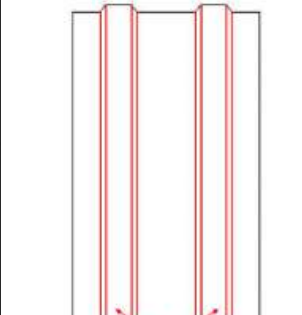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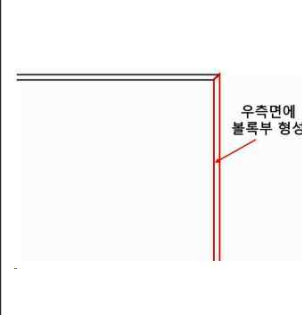
였고, 와 같이 좌측면도에도 돌출된 중간패널을 입체적 단차로 표시한 것으로 보인다.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사시도는 이 사건 등록디자인을 우측 대각선에서 바라본 방향을 기준으로 작성된 것이어서 좌측면에 형성된 돌출부가 사시도에 드러나지 않은 것으로 보일 뿐이고, 앞서 살펴 본 사시도의 우측에 평면도 및 좌측면도를 더하여 보면 두 장의 중간패널이 위쪽과 왼쪽으로 돌출되었음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일부 도면의 방향에 따른 불일치만으로는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요지를 파악할 수 없는 정도라고 보기는 어렵다.

2) 원고는, [도면 1.1](사시도)에는 중간패널이 좌측으로 오목하게 들어간 것처럼 보이나 [도면 1.6](평면도) 및 [도면 1.7](저면도)에는 중간패널이 볼록하게 돌출된 것처럼 보이고, [도면 1.5](우측면도)에는 중간패널의 요철로 보이는 구조가 돌출된 것인지 들어간 것인지 명확하지 않으며, [도면 1.2](정면도)에는 돌출된 구조가 보인다고 주장한다.⁶⁾

(표 삽입을 위한 여백)

6) 원고는 2026. 2. 20. 자 준비서면에서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도면 1.2](정면도)와는 달리 [도면 1.2](정면도)에도 우측면에 볼록부가 형성되어 있다고 주장하나, 갑 제2호증의 도면을 확대하여 보아도 그러한 볼록부는 확인되지 않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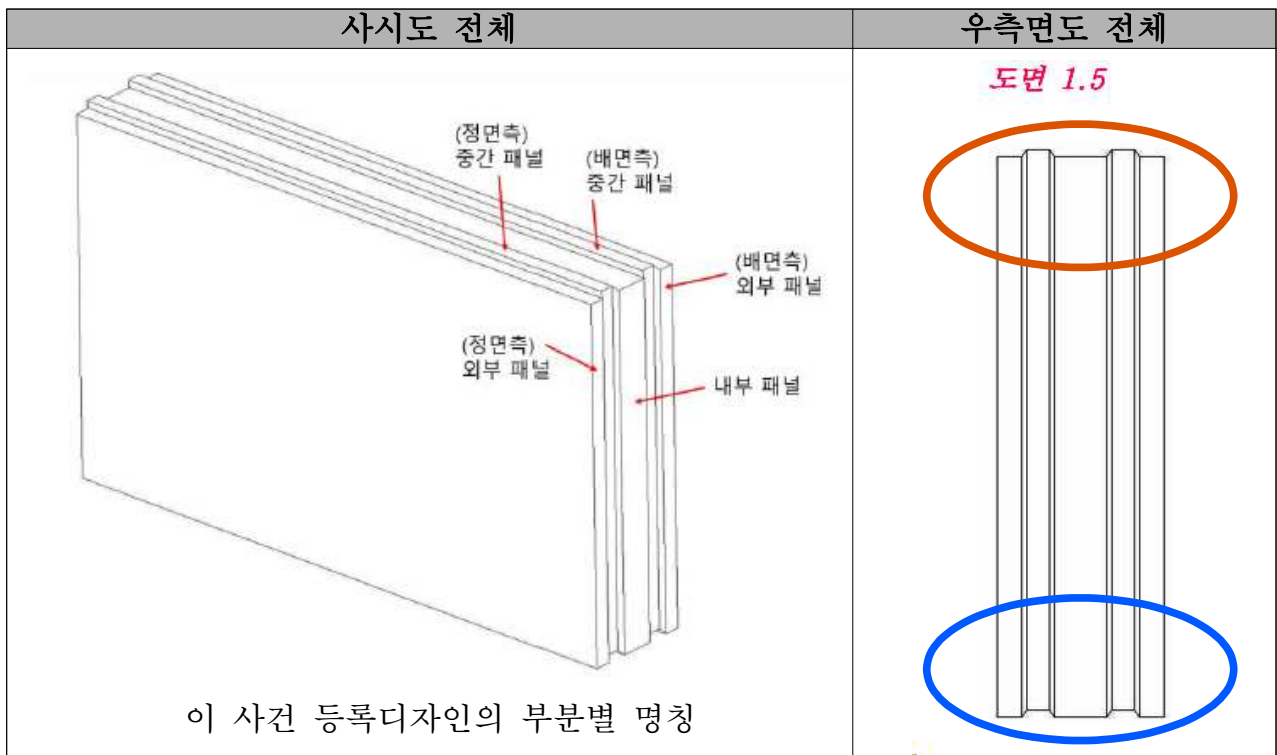
사시도(도면 1.1)	평면도(도면 1.6)/ 저면도(도면 1.7)	우측면도(도면 1.5)	정면도(도면 1.2)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서로 다른 경량블록을 끼움 결합하여 시공하기 위한 것으로 '건축용 경량블록의 형상과 모양의 결합'을 디자인 창작내용의 요점으로 하고 있다.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총 5장의 얇은 평면패널이 겹쳐진 형상으로, 서로 다른 경량블록을 끼움 결합하여 시공할 수 있도록 2장의 중간패널이 사시도를 기준으로 볼 때 각각 위쪽과 왼쪽으로 돌출되어 있다. 비록, 평면도와 저면도에 의하면 중간패널이 마치 오른쪽으로 돌출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전체적인 형상은 사시도에 의해 보다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데 위 사시도에는 중간패널이 왼쪽과 위쪽으로 돌출되어 있음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우측면도의 경우에도 위쪽으로는 돌출된 형상이, 아래쪽으로는 안쪽으로 들어간 듯한 형상이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사시도에서 확인되는 중간패널의 돌출 방향을 참조하여 볼 경우, 우측면도의 위쪽으로는 "위로 돌출된 중간패널"을 표현하기 위하여 중간패널의 위쪽 가장자리를 보다 높게 그린 것으로 보인다(아래 표 중 붉은색 원 부분). 같은 방식으로, "좌측으로 인입된 중간패널"을 구현하기 위하여 우측면도의 아래쪽으로는 중간패널의 아래쪽 가장자리를 바닥면에서 보다 위로 그린 것으로 보인다(아래 표

중 파란색 원 부분). 결국 우측면도의 '위쪽으로는 돌출되고, 아래쪽으로는 인입된 형상'은 위쪽과 왼쪽으로 각각 돌출된 중간블록의 형상을 2차원으로 동시에 보여주기 위한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사시도, 우측면도와 평면도/저면도 및 정면도에 다소간 불일치하는 점이 있기는 하나 이러한 불일치가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요지를 파악할 수 없을 정도라고 보기 어렵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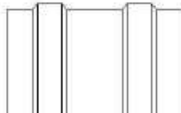
3) 원고는, [도면 1.1](사시도)에는 블록 상면/우측면에서 중간패널과 내/외부 패널의 경계 부분이 직각으로 보이나, [도면 1.6](평면도)나 [도면 1.7](저면도)에는 경계 부분이 경사면으로 보이고, [도면 1.4](좌측면도)나 [도면 1.5](우측면도)에도 경계 부분이 같은 방식으로 경사면으로 도시되어 있으며, [도면 1.2](정면도)와 [도면 1.3](배면도)에

는 이에 대한 확인이 불가하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돌출된 중간패널은 수직이 아니라 경사면을 가지고 있고 그 형상은 마치 육각형의 반을 자른 형태이며 이는 [도면 1.5]에서 [도면 1.7]에서 두 개의 실선으로 표시되었다고 주장한다.⁷⁾

사시도(도면 1.1)	평면도(도면 1.6)/ 저면도(도면 1.7)	좌측면도(도면 1.4)/ 우측면도(도면 1.5)	정면도(도면 1.2)/ 배면도(도면 1.3)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사시도에는 중간패널이 내부패널과 결합된 형상이 수직면으로 구현되어 있기는 하지만 피고의 주장과 같이 나머지 도면에서는 돌출된 중간패

널과 다른 패널들 사이의 연결부가 "  "과 같이 실선으로 처리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를 본 통상의 디자이너라면 중간패널이 다른 패널들과 경사를 이루며 돌출되어 있다는 점을 쉽게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가 주장하는 것과 같은 도면상 불일치가 있더라도 디자인의 요지를 파악하기 어렵다고 보이지 않는다.

다. 소결론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도면들 사이에 일부 불일치하는 사항이 있기는 하나 통상의 디자이너라면 디자인의 요지를 충분히 특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므로 디자인보호

7) 2026. 5. 21. 제1회 변론조서 참조.

법 제33조 제1항 본문에 해당하지 않는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4.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신규성 인정 여부

가. 관련 법리

디자인의 유사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이를 구성하는 각 요소를 부분적으로 분리하여 대비할 것이 아니라 전체와 전체를 대비 관찰하여 보는 사람의 마음에 환기될 미감과 인상이 유사한 것인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이 경우 디자인을 보는 사람의 주의를 가장 끌기 쉬운 부분을 요부로서 파악하고 이것을 관찰하여 일반 수요자의 심미감에 차이가 생기게 하는지 여부의 관점에서 그 유사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1996. 1. 26. 선고 95후1135 판결 등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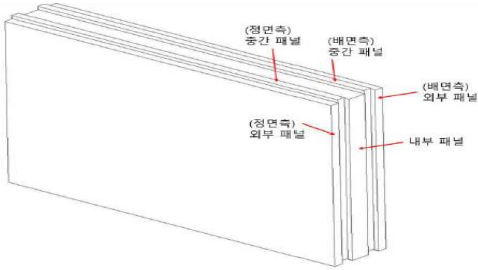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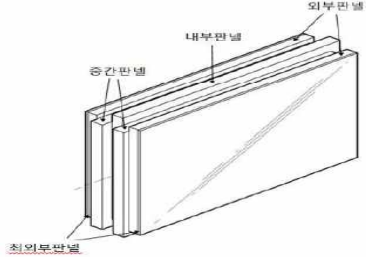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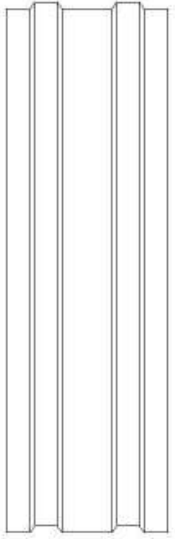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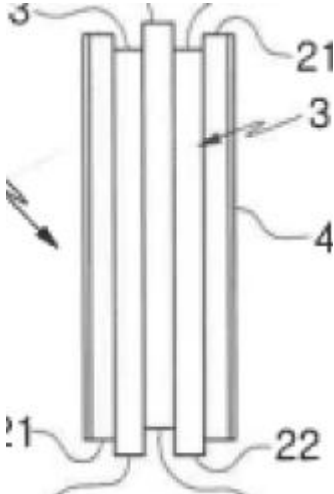
나.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선행디자인 1, 2의 대상물품의 동일·유사 여부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선행디자인 1의 대상물품은 모두 건축용 경량블록으로, 벽돌이나 블록 같은 개별 부재를 쌓아올려 구조물을 형성하는 물품인 점에서 용도와 기능이 동일하다.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선행디자인 2의 대상물품은 '유리 노(furnace) 축열기용 벽면 블록'으로 노(furnace)의 벽체를 시공할 때 사용하는 건축용 블록이므로 그 용도와 기능이 서로 유사하고, 이에 대해서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도 없다.

다.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선행디자인 1의 유사 여부

1) 선행디자인 1과의 대비

(표 삽입을 위한 여백)

	이 사건 등록디자인	선행디자인 18)
사 시 도		
측 면 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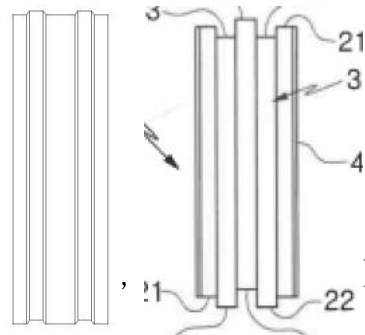
2) 공통점과 차이점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선행디자인 1은 다음의 점에서 공통된다.

- ① 2개의 외부패널과 2개의 중간패널, 1개의 내부패널이 결합된 구조로, 각 패널들은 모두 직사각형이다.
- ② 외부패널과 내부패널 사이의 2개의 중간패널은 외부/내부 패널과 높이가 다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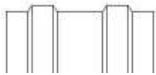
8) 선행디자인 1에는 '판넬'이라고 기재되었으나, 호칭의 통일을 위해 이하 '패널'로 기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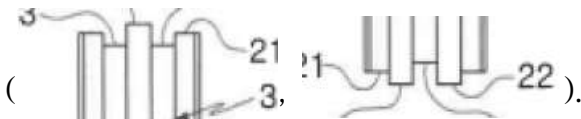
게 서로 어긋나는 형상으로 결합되어 있다(,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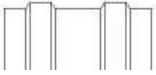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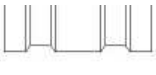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선행디자인 1은 다음과 같은 차이가 있다.

㉠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외부패널에는 아무것도 부착되지 않았으나, 선행디자인 1의 외부패널에는 미장패널이 외부패널과 마주보며 부착되어 있다.⁹⁾ 따라서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총 5개의 패널이 결합된 것이나, 선행디자인 1은 총 7개의 패널이 부착된 차이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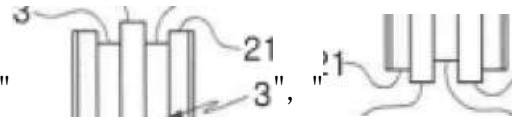
㉡ 측면도를 기준으로,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2개의 중간패널이 위쪽과 왼쪽으로 돌출되어 있다(위쪽 돌출 , 왼쪽 돌출 ). 그러나 선행디자인 1은 2개의 중간패널이 상단부에서는 나머지 패널들보다 아래로 부착되어 있고, 이에 따라 하단부에서는 2개의 중간패널들이 나머지 패널들보다 아래로 돌출된 형상이다



㉢ 돌출된 패널 높이의 경우,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 , "  "과 같이 상·하단부 모두 내부/외부 패널의 높이가 같아 비교적 안정적

9) 갑 제4호증 중 "요약"에는 고밀도미장패널(4)이 부착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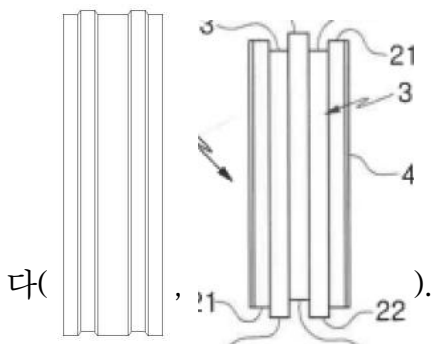
인 느낌을 준다. 그러나 선행디자인 1은 "



"과 같

이 상단부에서는 내부패널이 외부패널보다 높이 돌출되고, 하단부에서는 내부패널이 외부패널보다 훨씬 깊게 인입되는 등 내부/외부 패널의 높이차가 있어서 역동적이고 울퉁불퉁한 느낌을 준다.

㉔ 각 패널들의 두께(폭넓이)의 경우,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내부패널의 폭이 외부패널, 중간패널보다 약 2배 정도 큰 반면, 선행디자인 1은 각 패널들의 폭이 거의 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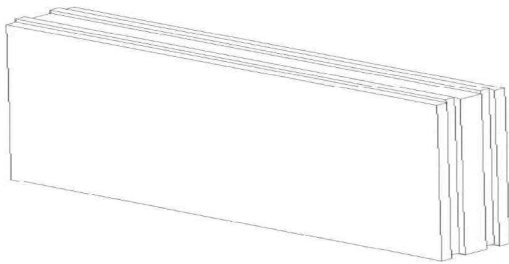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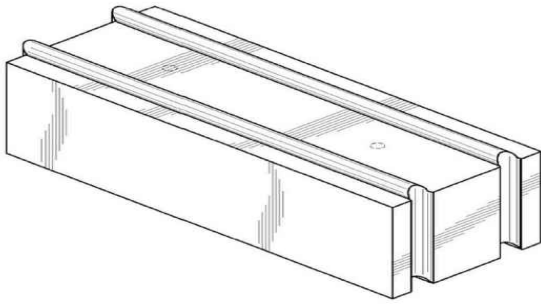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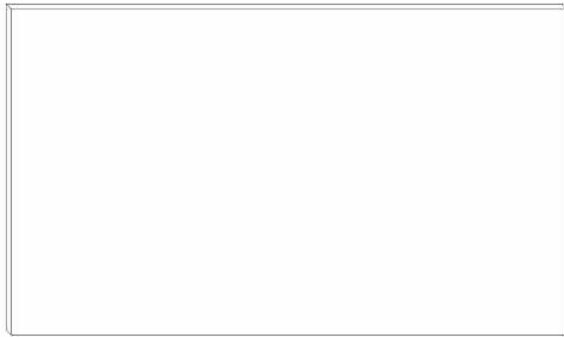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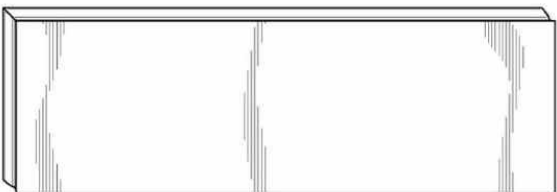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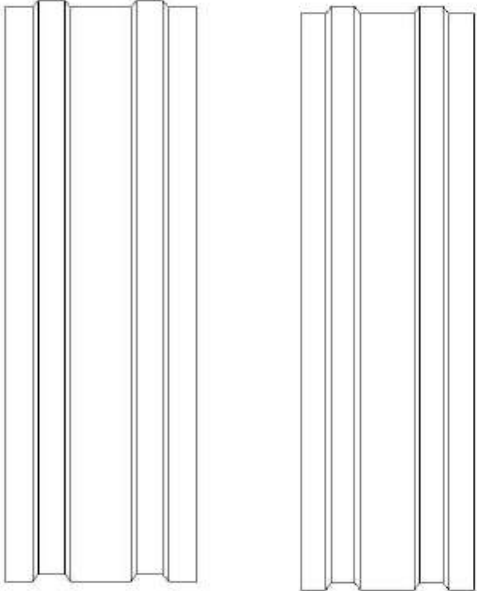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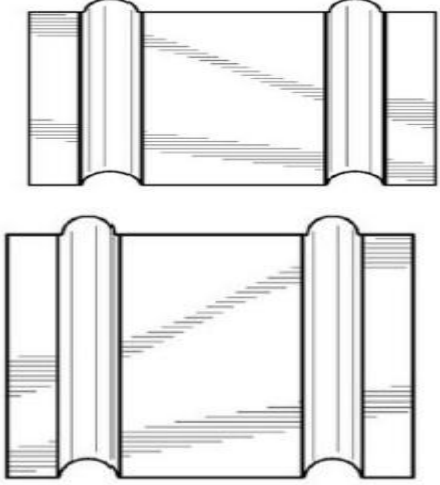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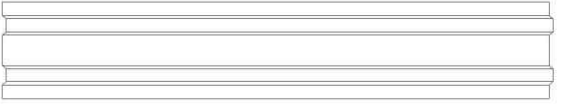
3) 검토

위와 같은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차이점 ㉒, ㉓, ㉔의 돌출된 패널의 개수 및 높이, 패널들의 폭은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선행디자인 1이 속한 대상물품에서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는 '테두리 부분의 요철'과 관련된 특징이다. 이는 일반 수요자 및 거래자들에게 지배적인 미감을 불러일으키는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앞서 든 차이점들로 인하여 일반 수요자 및 거래자들에게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보다 안정적이고 균형잡힌 미감을 주는 반면 선행디자인 1은 보다 복잡하고, 역동적인 느낌을 주는 점에서 심미감의 차이가 인정된다. 따라서 양 디자인은 유사하지 않다.

다.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선행디자인 2의 유사 여부

1) 선행디자인 2와의 대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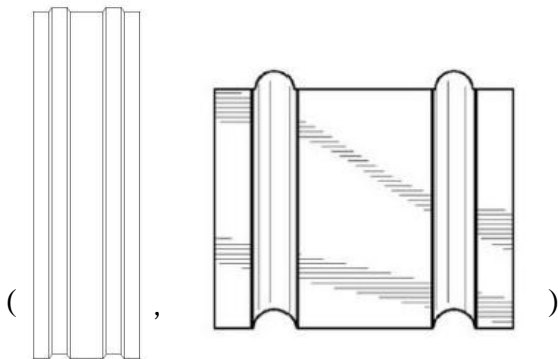
이 사건 등록디자인 사시도(도 1.1)	선행디자인 2 사시도(도 14.1)
	
정면도(도 1.2)	정면도(도 14.3)
	
배면도(도 1.3)	배면도(도 14.4)
	
좌측면도(도 1.4)/우측면도(1.5)	좌측면도(도 14.7)/우측면도(도 14.8)

	
평면도(도 1.6)	평면도(도 14.5)
	
저면도(도 1.7)	저면도(도 14.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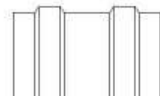
2) 공통점과 차이점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선행디자인 2는 다음의 점에서 공통된다.

① 각 패널들은 모두 직사각형으로, 2개의 외부패널과 2개의 중간패널, 1개의 내부패널이 결합된 구조이다. 외부패널과 내부패널 사이에 2개의 중간패널이 위치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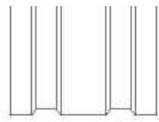


②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상단부에는 "



"과 같이 2개의 중간패널이 돌

출되어 있으나 하단부에는 "



"과 같이 2개의 중간패널은 인입되어 있어 상대적으로 외부패널 및 내부패널이 돌출되어 있다. 선행디자인 2 또한 상단부에는

"



"와 같이 2개의 중간패널이 돌출되었으나 하단부에는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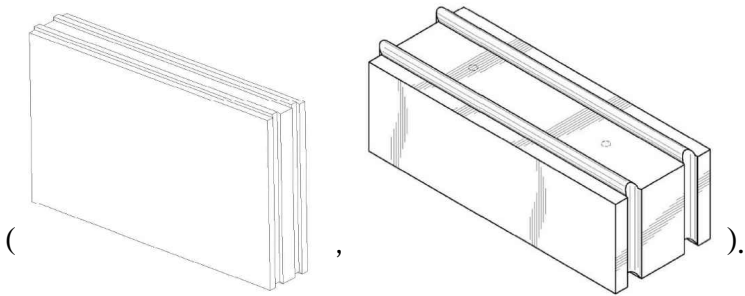


"과 같이 2개의 중간패널은 인입되고 이에 따라 상대적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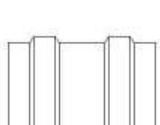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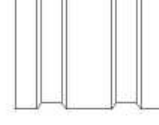
외부패널 및 내부패널이 돌출된 형상을 띤다.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선행디자인 2는 다음과 같은 차이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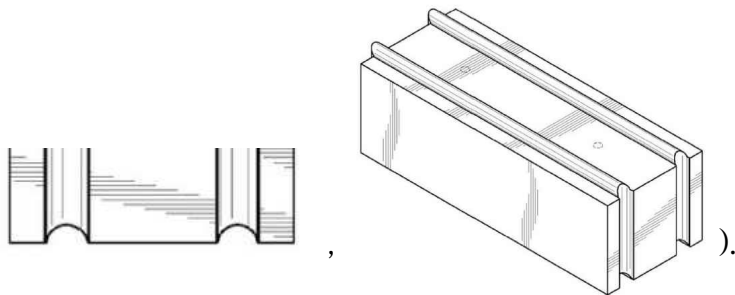
㉠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표면에 특별한 모양(무늬)이 없으나 선행디자인 2는 각 패널들의 외부에 실선 여러 개가 결합되어 형성된 곡선형의 모양(무늬)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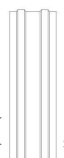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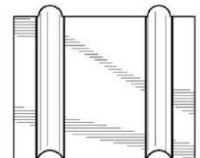
(,).

㉔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중간패널은 " , "  "과 같이 전체적으로 각이 진 형상으로 중간패널과 내부 및 외부패널의 경계는 경사면이 형성된 형상이다. 위와 같이 각진 중간패널의 돌출 및 인입으로 인하여 전체적으로 딱딱하고 안정된 인상을 준다. 반면 선행디자인 2의 중간패널은 돌출된 부분이 전체적으로 반원형

상을 띄고 있어서 안정적이고 부드러운 심미감을 준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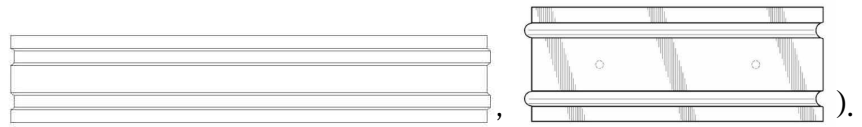


㉕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내부패널의 폭이 외부패널, 중간패널의 폭보다 약 2배 정도 넓다. 반면, 선행디자인 2의 경우 내부패널의 폭은 중간패널을 포함한 나머지 패

널의 폭보다 약 3배 이상 넓은 것으로 보인다(, ).

㉔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내부패널에는 통공이 없으나 선행디자인 2에는 2개의

원형 통공이 형성되어 있다(



).

3) 검토

위와 같은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차이점 ㉒, ㉔의 패널의 형상 및 패널들의 폭은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선행디자인 2가 속한 대상물품에서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는 '테두리 부분의 요철'과 관련된 주요 부위이고, 차이점 ㉑, ㉔과 같은 패널의 모양(무늬) 및 통공 여부 또한 일반 수요자 및 거래자들이 쉽게 확인할 수 있는 부분으로 위와 같은 차이점들로 인하여 상이한 심미감을 형성한다. 따라서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선행디자인 2는 유사하지 않다.

라. 소결론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선행디자인 1, 2와 유사하지 않으므로 디자인보호법 제33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지 않는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5.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창작이 용이한지 여부

가. 관련 법리

디자인보호법 제33조 제2항은 그 디자인이 속하는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제1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디자인의 결합에 의하여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것은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위 각 호에 해당하는 디자인의 결합뿐만 아니라 위 디자인 각각에 의하여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디자인도 포함된다고 봄이 타당하고, 그 규정의 취지는 위 각 호에 해당하는 디자인의 형상·모양·색채 또는 이들의 결합을 거의 그대로 모방 또는 전용하였거나, 이를 부분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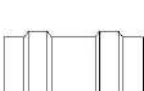
으로 변형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전체적으로 볼 때 다른 미감적 가치가 인정되지 않는 상업적·기능적 변형에 불과하거나 또는 그 디자인 분야에서 흔한 창작수법이나 표현방법에 의해 이를 변경·조합하거나 전용하였음에 불과한 디자인 등과 같이 창작수준이 낮은 디자인은 그 디자인이 속하는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것이어서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다는 데 있다(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8후2800 판결 등 참조).

나. 선행디자인 1, 2 및 선행디자인 1과 2의 결합으로부터 쉽게 창작할 수 있는지

1) 디자인의 대비 및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특징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선행디자인 1, 2의 공통점 및 차이점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다.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등록공보 중 '디자인의 설명' 및 '디자인 창작 내용의 요점'에는, '본 디자인은 건축물의 벽체, 칸막이, 이중벽 등을 시공할 때 사용하는 경량블록으로, 블록의 테두리 부분에 형성된 요철 구조를 통해 다른 경량블록을 끼움 결합하여 시공함.', '건축용 경량블록의 형상과 모양의 결합을 디자인 창작내용의 요점으로 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도면에는 2개의 중간패널이 외부패널 및 내부패널보다 위쪽, 왼쪽 방향으로 약간 돌출되어 있고, 중앙에 위치한 내부패널이 다른 패널보다 가로로 더 길게 형성되어 있다.

이러한 점들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주된 창작적 모티브는 중간패널이 다른 패널들보다 왼쪽, 위쪽으로 돌출된 채로 중앙에 위치한 내부패널이 길게 형성됨으로써 " , "  "과 같이 직선적이면서도 안정적인 심미감을 형성하는데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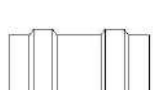
2) 선행디자인 1에 의해 쉽게 창작할 수 있는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선행디자인 1로부터 이 사건 등록디자인을 창작하는 것이 통상의 디자이너에게 용이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1)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선행디자인 1의 차이점들은 전체 패널의 개수, 2개의 중간패널이 돌출된 방향, 돌출 및 인입된 중간패널과 나머지 패널들 사이의 높이, 각 패널들의 두께에 관한 것이다. 이는 모두 대상물품에서 수요자들의 눈에 잘 띄는 부분들로 위 차이점들은 수요자들의 주의를 끌기 쉽고 심미감에 영향을 미치는 지배적인 특징으로 볼 수 있다.

위와 같은 차이점들로 인하여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비교적 안정적이고 균형감 있는 미감을 형성한다. 반면, 선행디자인 1은 이 사건 등록디자인에 비하여 패널 수가 많고 내부패널의 간격이 상대적으로 좁으며 돌출 및 인입된 중간패널과 나머지 패널의 높이가 달라 상대적으로 역동적인 미감을 형성한다. 이에 따라 두 디자인을 보는 사람들에게 상이한 심미감을 준다.

(2) 이에 대하여 원고는, 위와 같은 차이점들은 상업적 또는 기능적 변형에 불과하거나 해당 디자인 분야에서 흔한 창작수법이나 표현방법으로 변경 및 조합하거나 변용하는 등 창작 수준이 낮은 디자인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원고가 주장하는 부분은 차이점 ㉠과 관련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차이점 ㉡, ㉢과 같은 돌출된 패널 개수 및 그 높이의 차이로 인하여 선행디자인 1은 역동적이고 울퉁불퉁한 미감을 형성하는 것과 달리,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돌출된 패널의 높이를 동일하게 함으로써 선행디자인 1과 차별화되는 안정적인 미감을 형성하고, 차이점 ㉣은 내부패널의 길이 차이에 관한 것으로서, 앞서 살펴본 것과 같이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내부패널이 다른 패널보다 2배

정도 길게 형성되어 " , "  "과 같이 테두리 부분의 요철이 직선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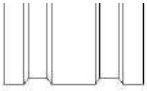
이면서도 안정적인 심미감을 형성하는 반면, 선행디자인 1은 " ,

"  "과 같이 요철이 있는 역동적인 심미감을 형성하므로 내부패널의 폭 넓이의 차이 역시 단순한 수치 조정을 넘어 두 디자인의 전체적인 구조와 형태에 영향을 줌으로서 서로 다른 심미감을 준다. 이러한 이유로 차이점들이 '건축용 경량블록'의 기능적 형상에 지나지 않거나 단순한 상업적 변형에 불과하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자료도 없다. 위 차이점들을 건축용 경량블록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보더라도 선행디자인 1과 같이 대체 가능한 형상이 존재하는 이상 이 사건 등록 디자인이 택한 위와 같은 형상들이 그러한 기능을 위한 필수 불가결한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고, 이를 인정할 자료도 없다.

3) 선행디자인 2에 의해 쉽게 창작할 수 있는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선행디자인 2로부터 이 사건 등록디자인을 창작하는 것이 통상의 디자이너에게 용이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선행디자인 2와의 차이점들 또한 앞서 살펴 본 선행디자인 1과의 차이점들이 유발하는 심미감의 차이와 마찬가지로 전체적인 형상에 영향을 미친다 할 것이다. 즉, 차이점 ㉠의 모양(무늬) 차이로 인하여 선행디자인 2는 전체적인 외관이 화려하고 다채로운 심미감을 형성하나,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아무런 모양(무늬) 없이 절제미가 있으면서도 정갈한 심미감을 형성하는바, 무늬를 제거하는 것이 상업적·기능적 변형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차이점 ㉡, ㉢에서 확인되는 중간패널의 돌

출된 형상의 차이로 인하여 선행디자인 2는 완만한 곡선미가 느껴지는 반면 ()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직선으로 형성되어 있어서 안정적인 심미감을 준다( , ). 따라서 도출된 형상()에서 각진 경사 형상()으로 변경하고 중간패널과 내부패널의 폭넓이를 변경하는 것은 단순한 외형 조정에 그치지 않고 전체 심미감에 의미있는 변화를 야기하는 점에서 상업적·기능적 변형으로 볼 수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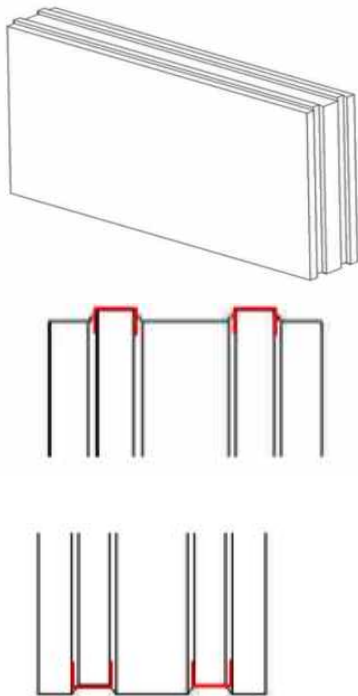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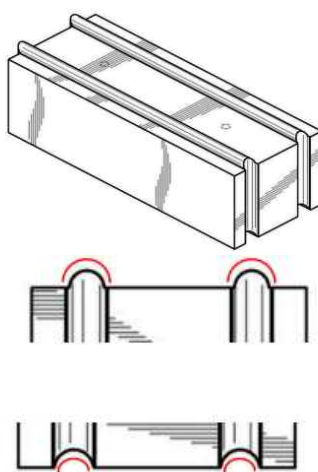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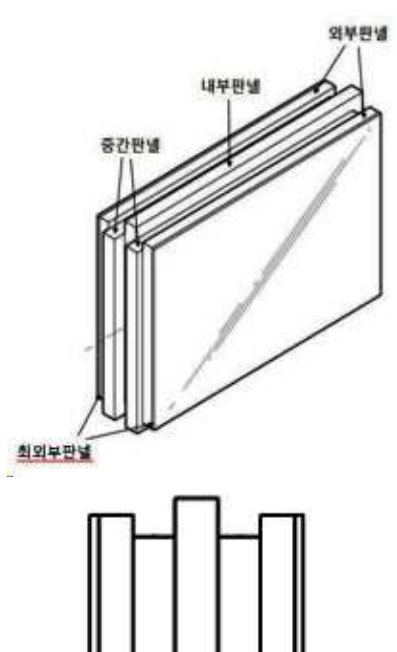
나아가 앞서 살펴 본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선행디자인 2 사이의 차이점들과 관련된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특징들이 그 출원 전에 공지되었거나 국내에서 널리 알려진 형상·모양 등을 그대로 모방 또는 전용하거나, 해당 디자인 분야에서 흔한 창작수법이나 표현 방법에 의하여 변경·조합하거나 전용한 것에 불과하다는 점에 관한 원고의 구체적인 증명도 없다.

따라서 통상의 디자이너가 선행디자인 2를 참고하더라도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차이점들과 관련된 부분을 쉽게 도출할 수 있다고 단정할 수 없음은 마찬가지이다.

4) 선행디자인 1, 2의 결합으로부터 쉽게 창작할 수 있는지

원고는, 선행디자인 2를 주선행디자인으로 하여 선행디자인 1의 블록의 폭, 길이, 두께, 높이 등의 비율을 적용하고 테두리 요철 구조의 경계면간 직각 형상을 적용하여 이 사건 등록디자인을 쉽게 창작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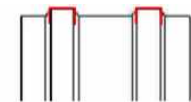
(표 삽입을 위한 여백)

이 사건 등록디자인	선행디자인 2	선행디자인 1
		

원고가 인정하는 차이점은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선행디자인 2 사이의 차이점 ㉠, ㉡에 해당하는데, 위 주장은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유 없다.

선행디자인 1은 각진 형상의 2개의 중간패널이 내부패널을 사이에 두고 결합되어

있어서(),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2개의 경사진 중간패널이 내부패널을

사이에 두고 결합된 형상'과 일부 유사한 측면이 있기는 하다(). 그러

나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중간패널은 경사면을 가진 각진 형상으로 위쪽으로 돌출되고 아래쪽으로는 인입되었으며 중간패널을 제외한 내/외부 패널들의 높이가 동일하다. 반면, 선행디자인 1의 중간패널은 경사면이 없는 직육면체 형상으로 위쪽으로 인입되고

아래쪽으로는 돌출되었으며 내부패널과 외부패널의 높이가 서로 다르다. 따라서 선행 디자인 2에 선행디자인 1을 결합하더라도 선행디자인 2의 차이점 ㉔, ㉕은 쉽게 극복 될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선행디자인 2 사이에는 차이점 ㉖도 있음은 앞서 살펴 본 바와 같은데 선행디자인 1에는 나머지 차이점들과 관련된 이 사건 등록 디자인의 구성 부분과 동일·유사한 구성도 전혀 나타나 있지 않다. 위 차이점이 확인 되는 부분 또한 수요자들이 대상물품인 건축용 경량블록 외면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어 심미감에 영향을 미치는 지배적인 특징에 해당하고 이러한 차이점으로 인해 서로 다른 심미감을 준다는 점은 이미 살펴 본 바와 같다.

다. 소결론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통상의 디자이너가 선행디자인 1 또는 선행디자인 2 또는 선행디자인 2에 선행디자인 1을 결합하여 쉽게 창작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디자인보호법 제33조 제2항에 해당하지 않는다.

6. 이 사건 등록디자인이 무권리자 출원에 해당하는지

가. 관련 법리

디자인보호법 제3조 제1항 본문은 "디자인을 창작한 사람 또는 그 승계인은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라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121조 제1항 제1호는 "제3조 제1항 본문에 따른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지지 아니한 경우"를 등록무효사유의 하나로 규정하였다. 여기서 "디자인을 창작한 사람"은 디자인의 전체적인 미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부 내지 지배적인 특징 부분을 착상하거나 그 착상을 구체화한 사람을 의미하고(특허법원 2021. 7. 15. 선고

2020허5351 판결 참조), 디자인등록을 출원하여 등록받은 사람이 그 디자인을 창작한 사람 또는 그 승계인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은 그 디자인등록의 무효를 주장하는 사람에게 있다(특허법원 2019. 7. 12. 선고 2018허9343 판결 참조).

나. 판단

원고는, 피고의 실질적 대표자였던 원고의 대표이사 B이 2017. 1.경부터 2.경 사이에 E와 함께 이 사건 등록디자인을 창작하였음에도 피고를 디자인권자로 하여 출원하였으므로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진정한 창작자가 아닌 자에 의하여 출원된 것으로서 디자인보호법 제121조 제1항 제1호, 같은 법 제3조 제1항 본문에 따라 그 등록이 무효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에 을 제1, 3 내지 6호증¹⁰⁾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갑 제6 내지 12호증¹¹⁾을 비롯한 원고가 제출한 위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등록디자인이 무권리자가 출원한 것으로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갑 제6, 1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주식회사 F은 2017. 4. 20., G에 근무하는 H은 2017. 5. 4. B에게 이 사건 등록디자인을 제작하는 데 필요한 금형의 도면 및 견적서에 관한 메일을 송부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원고 스스로도 당시 피고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것은 B이었다고 주장하는 바 위 회사들이 업무 관련 이메일을 B에게 보낸 사실만으로는 B을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디자인권자로 보기는 부족하다.

② 갑 제7호증은 2016. 6. 20.자 회의록으로 그 무렵 피고의 운영과 관련한 회의 내용을 요약 정리한 것이고 갑 제8호증은 건축용 경량블록 시제품 및 성형몰드를 촬영

10) 원고는 을 제5, 7호증에 대하여 각 '부지' 의견을 밝혔으나,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그 진정성립이 인정된다.

11) 피고는 갑 6 내지 12호증에 대하여 각 '부지' 의견을 밝혔으나,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그 진정성립이 인정된다.

한 사진에 불과한데 원고는 위 각 사진들이 이 사건 등록디자인에 따른 건축용 경량블록의 시제품이라고 주장하는바, 원고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더라도 이 사건 등록디자인에 따른 건축용 경량블록 제품을 생산하여 찍은 것들에 불과할 뿐이다. 비록 위 사진들이 B의 휴대폰으로 촬영되었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

③ 갑 제10호증은 B와 E가 2017년 4월경 주고받은 문자 내역으로 E가 I에게 도면을 보내라는 것과 E가 G를 방문하여 금형에 대해 논의하였다는 내용을 포함할 뿐이다. 갑 제11호증은 압출바 관련 도면 및 건축용 경량블록의 금형 제작 문의를 받은 업체에서 보낸 설계 도면인데, 원고의 주장과 같이 B이 이 사건 등록디자인을 설명하고 금형 제작을 문의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들어 B을 디자인권자로 볼 것은 아니다.

④ 그밖에 B이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아이디어를 착상하였다거나 이를 구체화하여 작성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도면이나 기타 관련 자료들도 전혀 제출된 바 없다.

다. 소결론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무권리자에 의해 출원된 것으로 보기 어려워 디자인보호법 제121조 제1항 제1호, 같은 법 제3조 제1항 본문에 해당하지 않는다.

7. 결론

이 사건 심결에는 원고가 주장하는 위법이 없다. 이 사건 심결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김재령

판사 이지영

판사 성재혁

[별지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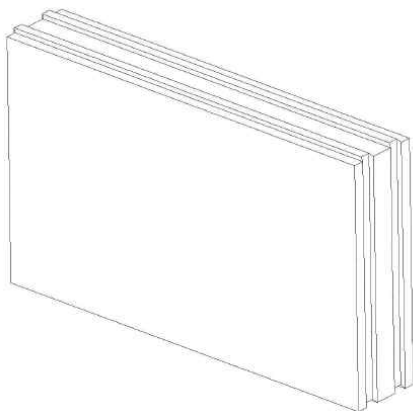
이 사건 등록디자인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 건축용 경량블록

【디자인의 설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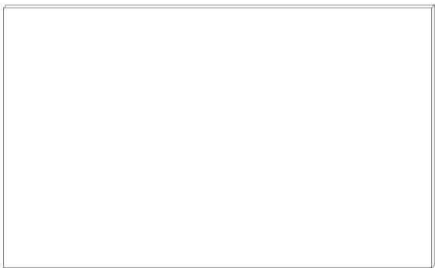
1. 재질은 시멘트, 실리카, 발포 폴리스티렌 비드임.
2. 본 디자인은 건축물의 벽체, 칸막이, 이중벽 등을 시공할 때 사용하는 경량블록으로, 블록의 테두리 부분에 형성된 요철 구조를 통해 다른 경량블록을 끼움 결합하여 시공함.
3. [도면 1.1]은 본 디자인의 전체형태를 표현한 사시도임. [도면 1.2]는 본 디자인의 정면부분을 표현한 정면도임. [도면 1.3]은 본 디자인의 배면부분을 표현한 배면도임. [도면 1.4]는 본 디자인의 좌측면부분을 표현한 좌측면도임. [도면 1.5]는 본 디자인의 우측면부분을 표현한 우측면도임. [도면 1.6]은 본 디자인의 평면부분을 표현한 평면도임. [도면 1.7]은 본 디자인의 저면부분을 표현한 저면도임.

【디자인 창작 내용의 요점】 건축용 경량블록의 형상과 모양의 결합을 디자인 창작내용의 요점으로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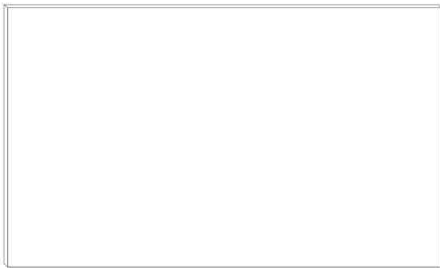


[도면 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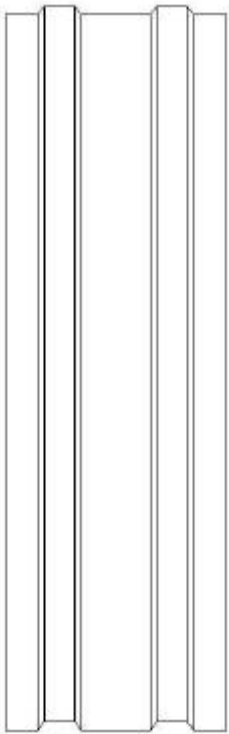
[도면 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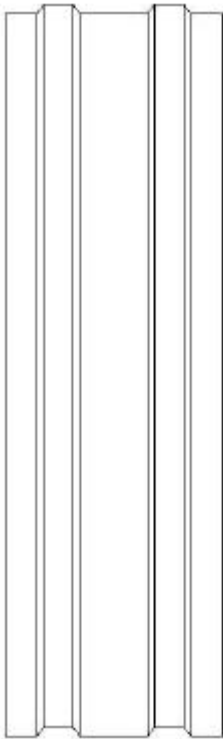
[도면 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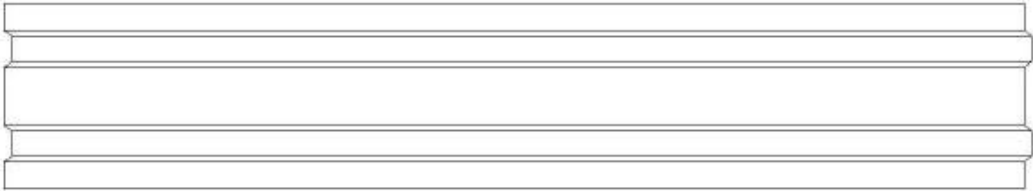
[도면 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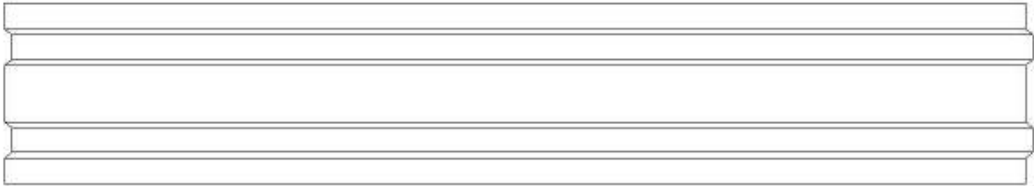
[도면 1.5]



[도면 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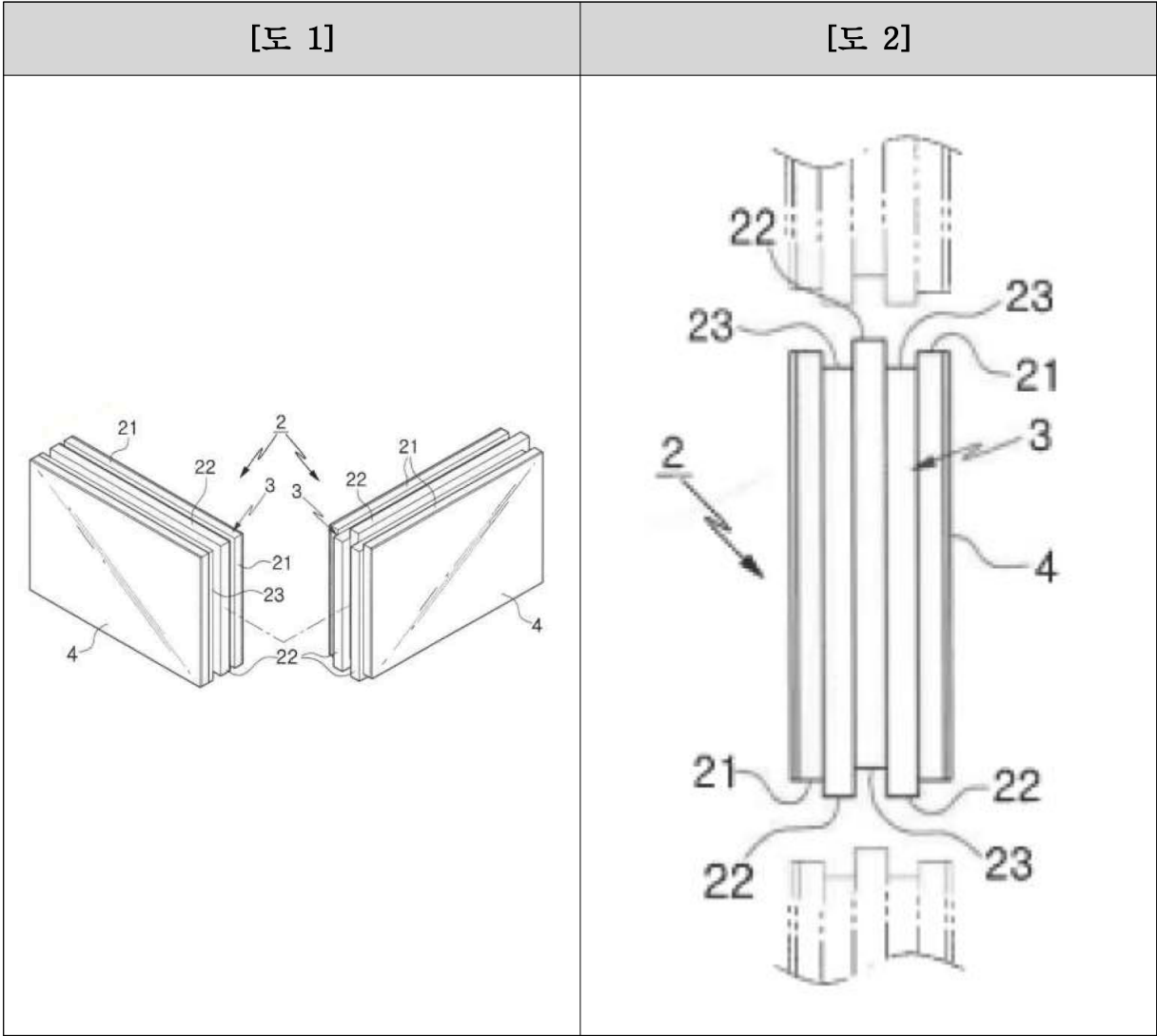


[도면 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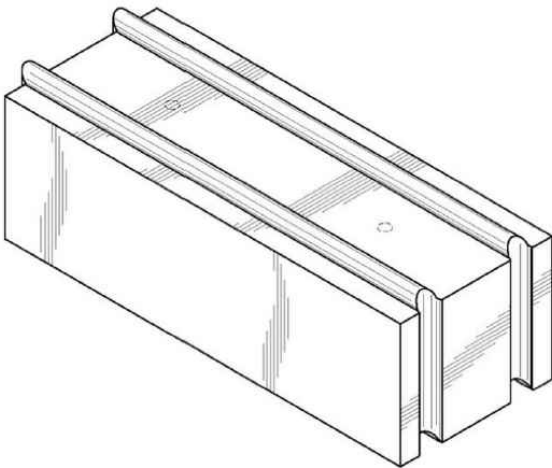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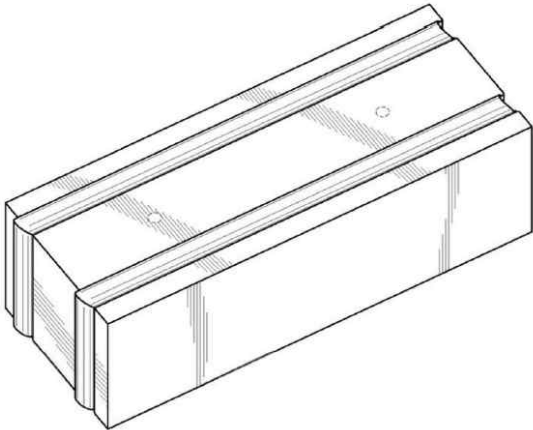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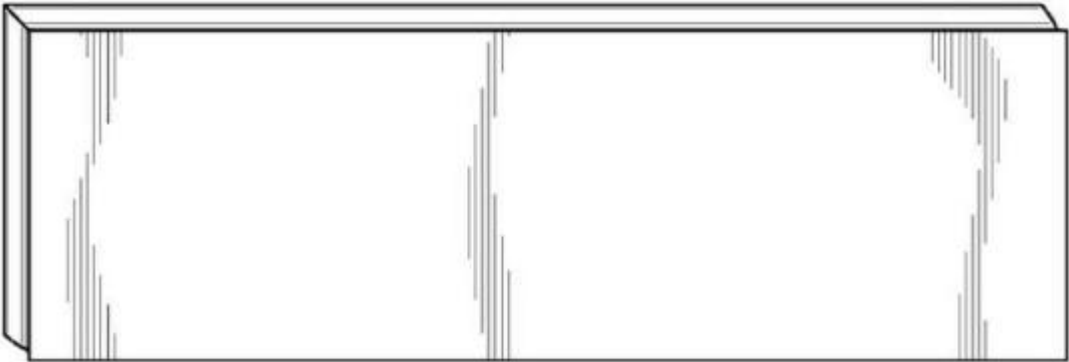
[별지 2]

선행디자인 1



[별지 3]

선행디자인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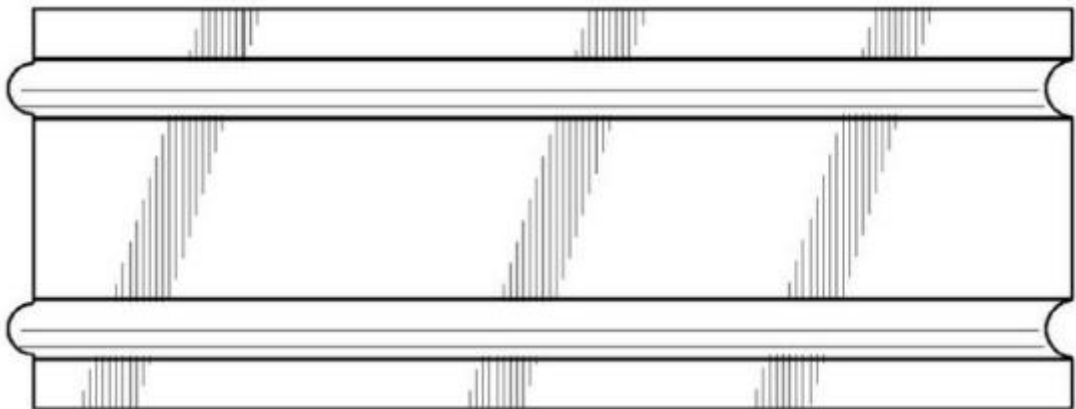
도 14. 1	도 14. 2
	
도 14.3	
	
도 14.4	



도 14.5



도 14.6



도 14.7	도 14.8
